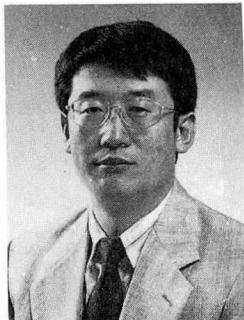


# 자동차 화재의 대응방법

– 소비자를 중심으로 –

황 광 로  
 〈한국소비자 보호원  
 피해구제국 자동차팀장〉



◆ 자동차는 예측가능한 고장 발생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갖추어져 있으나……

영화를 보면 자동차 사고의 경우 대부분 화재가 발생하면서 자동차가 폭발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동차는 그 특성상 쉽게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되면 폭발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자동차는 첨단기술의 집합체라고 말할 정도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기계장치로 웬만한 하자가 발생되면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경고표시가 되거나 확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동이 정지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예컨데 엔진체크 등이 들어온다던지 전기휴즈가 나간다던지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장치는 사후조치를 전제로

한 장치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안전장치에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위의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대형사고를 당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자동차 화재사건은 그리 흔하게 발생되지는 않지만 일단 화재가 발생되면 막대한 재산피해는 차치하더라도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대형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여간 걱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화재가 발생되면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소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화재원인을 밝혀 내기란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자를 상대로 보상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동차 화재가 발생되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면 대부분의 경우 차량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소비자 자신이 화재원인을 밝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96년 한 해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자동차 화재사건이 40건이나 되나 상당건이 소비자 과실로 나타나……

'96년중에 자동차 화재사건으로 분쟁이 발생하

여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청구건으로 접수된 사건이 40건 정도 되나 실제적으로 '96년 한 해 동안 발생된 자동차 화재는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으로 화재감식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전소된 경우가 많아 화재원인을 밝혀 내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심화되어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분쟁이 심화된 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화재가 발생된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하기 때문에 화재원인을 규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화재사건의 경우는 전문가의 화재감식이 필수적이다.

'96년 중에 접수된 자동차 화재사건을 조사한 결과 40건중 13건은 소비자의 과실이나 방화사건으로 밝혀지고 나머지 27건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밝혀졌으나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과실의 경우 음주후 장시간 시동을 켜놓고 무심코 가속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다 엔진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된 경우가 많았으며, 냉각수 부족으로 엔진이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된 경우도 있었다.

차량결합의 경우는 전기배선의 합선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엔진과열로 나타났으며 원격시동기 등 장착물을 잘못 장착하여 화재가 발생된 경우도 많았다.

#### ◆ 자동차 화재 보상요구에 대하여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든지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한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보상책임이 있어……

자동차 화재사건에 대하여 사업자는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는 원인을 알 수 없다든지 아니면 차체결함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상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동차는 2만여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설령 화재의 원인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제조물 책임원칙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는 민법의 일반물법이론을 확대 해석하여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으며, 일부 판례에서는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여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 주도록 판결한 판례도 있다.

현행 민법체계에서 소비자가 제조물 책임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에 기본적인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화재의 원인을 밝혀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화재의 원인을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 입증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화재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자에게 지우는 제조물책임원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관계당국에 제조물책임법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최근 사법부에서 자동차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사건에서 소비자가 제조물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결함원인에 대하여 정확한 입증이 없더라도 제조물 결함에 대해

높은 개연성이 있다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끈 일이 있다.

동 판결에 의하면 차량화재의 원인이 제조상 결합일 개연성이 높고 제조사측이 이에 대해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혀 제조물책임원칙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동 판결의 이유로 제조물인 자동차의 결함 존재 여부와 결합발생 시점에 관하여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과 자료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지식과 판단자료가 제조사에 편중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결합원인을 밝혀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조건에 대하여도 판시하고 있는데 그 조건은 소비자가 제조물인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 사용했고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위험이 발생했으며 그 위험이 제3자의 고의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것이고 결합이 없었다면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이 있을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이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판결을 통해 어느정도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자동차 화재사건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제조사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정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는 최소한도 소비자가 자동차 화재발생시, 특히 주차중에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는 화재발생시간, 발화부위, 목격자의 진술 등 어느 정도의 정황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차체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이번에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원칙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은 대량생산 체계하에서 정상적인 제품의 경우 보증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품질에 대한 보증과 혹시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되면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다는 소비자와 당해 사업자간의 약속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하자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보증기간은 하자발생에 대하여 수리비 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보증기간이 지났다 하여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보증기간이 경과된 차량의 경우도 하자가 발생되면 수리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더라도 수리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증기간이 경과된 차량이라도 차량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자에게 보상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보상규모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과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경우 차량등록비를 포함하여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량구입 후 1년 이내 및 주행거리 2만km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이 초과되었으나 차량을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어야 될 사유가 있을 때는 그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감

가상각을 하고 잔존가액을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 화재의 경우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고 당해 차량이 1년 이내이며 주행거리가 2만km 이내일 경우는 원칙적으로 차량등록비 등 제경비를 포함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차량구입 후 1년이 경과된 차량일 경우는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운전자의 일상점검은 하자발생시 2차적인 피해예방을 위하여 매우 중요…… 자동차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자차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아……

자동차는 여타 물건과는 달리 사용자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재산상의 피해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평소 차량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오일이나 냉각수가 새거나 부족하지는 않는지, 적정 시기에 교체를 했는지,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 오지는 않는지 등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운전자라면 최소한 차량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사항을 일상점검사항이라고 하는데, 점검요령은 각 차량마다 비치된 사용설명서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사용설명서를 꼭 히 읽어보고 점검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만약 일상점검 중에 이상이 발견되면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비업소에 수리를 요구하면 간단한 조치로 문제가 해소되나 이를 방지하면 문제가 확대되어 예상치 못한 대형사고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냉각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보충하지 않고 방치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엔진이 과열되면서 엔진이 소착되어 엔진내부가 모두 파손되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되어 대형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와같은 사항을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를 소홀히 하여 막대한 재산피해

를 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는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특성상 항상 사고의 개연성을 안고 있고 또한 사고발생시 제3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운전자는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의 경우는 자신의 운전실력을 과신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하더라도 차차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는 수만개의 부품으로 조립된 움직이는 기계장치다. 따라서 아무리 운전경력이 많고 운전 실력이 월등하다 하더라도 순간적인 실수로 또는 예기치 못한 하자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의 기계적인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자동차 제조업체에 피해보상책임이 있으나 차량결함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뾰족한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특히 자동차 화재사건은 화재원인 규명이 불가할 정도로 전소된 경우 정황으로 보아 소비자 과실보다는 차량결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이 되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이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에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귀책사유를 가려 만약 차체결함이 밝혀지면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메이커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소비자는 구태여 거대한 자동차 메이커를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필히 자차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